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FAQ

##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 1.

교 육 부

한 국 연 구 재 단

# 1 사업 신청 요건

| | |
|---|---|
| **Q-1** | **사업 신청 요건으로서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
| **A-1** | 참여 학사조직(단과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①, ② 모두 충족) ①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기술이전, 특허,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산업체 공동연구 등) 반영되어야 하고, ②재임용 및 승진 · 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이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는 '22년 3월 기준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인사제도 제 · 개정 사항이 반영된 규정 시행일 기준)에 한해 인정됩니다. |
| **Q-2** | **교원 업적평가·인사제도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지표 관련, 산학협력 실적이 연구, 교육, 산학협력, 봉사 등 업적평가 각 부문에서 모두 인정 가능한지?** |
| **A-2** | '교원 업적평가 · 인사제도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지표는 제시된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인사규정 및 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업적평가 및 승진 · 승급 · 재임용 심사 시 연구, 교육, 산학협력, 봉사 등 업적평가 부문에 반영된 산학협력 실적 점수의 실제 반영비율을 산출합니다. |
| **Q-3**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요건 관련 사항은 무엇인지?** |
| **A-3** | 신청대학의 사업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 제공되는 신청 요건자료 양식에 따라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와 함께 별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건자료는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전문,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증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br>* 사업신청 제출서류 : 제출공문(전자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5부), 신청요건자료(35부),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

# 2 사업단 구성

| | |
|---|---|
| **Q-1** | **타 재정지원사업(BK, RIS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조직이 LINC 3.0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
| **A-1** | LINC 3.0 사업은 지원단위를 대학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조직이 LINC 3.0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재정지원 사업별 목적과 추진내용에 따라 차별화하고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 ·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2** |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사업단 참여가 가능한지?** |
| **A-2** | 신입생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는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으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 **Q-3** | **사업단 참여학과를 1개 단과대학과 1개 학과(단과대학 비참여)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단과대학에 소속된 개별학과의 참여 기준은?** |
| **A-3** | ▪ 사업단은 복수의 단과대학 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구축, 확산에 유리한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업단 비참여 단과대학의 개별학과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전공) 단위로의 참여 허용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학과(전공)의 소속 단과대학의 교원인사제도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br>▪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구성은 단과대학 단위를 원칙으로 하므로, 참여 단과대학에 소속된 모든 개별학과는 참여학과에 포함됩니다. |
| **Q-4** | **사업유형 중 수요맞춤성장형 및 협력기반구축형 사업단도 대학원생(석·박사과정) 참여가 가능한지?** |
| **A-4** | 대학의 산학연협력 여건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단 구성 · 운영체계를 수립하며,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참여 학사조직 구성 관련 대학원 참여가 가능하며, 대학원 소속 학위과정생(석 · 박사)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혁신선도형 사업단의 경우 참여 학사조직 구성 시 일반대학원(석 · 박사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Q-5** | **참여 학사조직으로 대학원 포함 구성 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도 참여 가능한지?** |
| **A-5**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도 대학원 참여 학사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혁신선도형 사업단의 경우 참여 학사조직 구성 시 일반대학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3 핵심성과지표

| | |
|---|---|
| **Q-1** | **핵심성과지표 중 참여학과 전임교원 및 재학생 관련 지표의 경우,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도 모수 및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
| **A-1** | 핵심성과지표(정량) 실적 산정에서는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은 모수 및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창출한 활동성과는 정성 실적 해당 부분에서 인정 · 평가합니다. |

| | |
|---|---|
| **Q-2** | **취업률 산정 관련 근거자료는?** |
| **A-2** | ▪ “취업률” 지표의 경우, 계열 분류 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통계조사 학과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취업률 산정은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자료(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를 근거로 합니다.<br>▪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 취업률”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취업률” 지표의 경우, 졸업생(취업대상자)은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산정 기준*에 의하고, 교과를 이수한 졸업생 중 취업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br>* 졸업생(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 | |
|---|---|
| **Q-3** | **산학협력단 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사업단 참여학과로 겸직하는 이중소속 등의 경우 전임교원 관련 핵심성과지표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 **A-3** | 사업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핵심성과지표의 참여학과 전임교원은 대학 정보공시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항목의 전임교원 소속학과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즉 해당 교원의 본 소속학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Q-4** | **전임교원 참여 비율 관련 산학연계 교과목 신규 개발 실적으로 학점 이수가 불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도 인정 가능한지?** |
| **A-4** | 전임교원의 산학연계 교과목 신규 개발 실적은 이수 결과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 개발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 | |
|---|---|
| **Q-5** | **교수 업적평가/인사제도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지표 관련 세부 사항으로, 인사규정 상 '승급' 제도가 없는 경우의 적용 및 업적평가 대상이 되는 '전임교원'의 범위는?** |
| **A-5** | ▪ 교원 승급 관련하여 심사절차 없이 자동 승급되는 경우, 승급을 제외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대하여 산술평균( '교원 승진 · 승급 · 재임용 기준 점수 대비 반영된 산학협력 실적점수 평균 반영 비율' 산출 시 ⅓이 아닌 ½을 적용)하여 해당 지표 실적을 산출합니다.<br>▪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을 평가하는 업적평가 대상 전임교원은 대학 정보공시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항목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Q-6** | **현장실습 이수학생 취업률의 경우 실습기관과 취업기업이 상이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동일학생이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취업률과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취업률 각 지표의 실적으로 모두 인정되는지?** |
| **A-6** | 현장실습 이수학생 취업률 산정 시 실습기관과 취업기업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한 사업단 참여학과 학생이 취업한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 취업률 지표와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취업률의 각 지표에서 모수 및 실적으로 각각 산정 및 인정됩니다. |
| **Q-7** |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관련, "기업 연계 기반" 캡스톤디자인 교과의 판단 기준은?** |
| **A-7** | "기업 연계 기반" 의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에서 문제 및 주제를 제시하고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에 산업체 인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과를 의미합니다. 기업 연계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산학연계 교육협약서, 수업계획서(산업체명 및 연계 내용 포함), 산학연계 교육 실적보고서(산업체 참여인사 활용 내용 포함)를 확인합니다. |
| **Q-8** |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관련, 학제 간 융합 캡스톤디자인 등을 이수한 타 학과 학생의 실적 인정 여부는?** |
| **A-8** |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의 경우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적을 산정하므로, 사업단 참여학과 학생이 타 학과에서 운영하는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 소속 학과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원 소속 학과가 사업단 비참여학과인 경우 해당 학생은 실적 산정의 모집단이 되는 산식 분모(3,4학년 재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
| **Q-9** |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관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 **A-9** | 인문 · 사회 및 예 · 체능 계열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의 경우, 실적 인정 기준 중 시제(작)품 제작을 위한 실험 · 실습비가 직접 소요되지 않는 교과목이 다수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캡스톤디자인 지원금 지급은 인문 · 사회 및 예 · 체능 계열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의 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 | |
|---|---|
| **Q-10** | **산학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의 경우, 교내/중앙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및 재위탁 과제를 통해 창출한 실적도 인정되는지?** |
| **A-10** | 산학공동연구는 민간 산업체, 연구소, NGO단체, 민간단체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에 한하며, 교내/중앙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및 재위탁 과제는 제외합니다.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의 경우 지자체 지원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br>*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1> 5대 분류 체계 적용(대학정보공시의 '5대 표준분류체계' 참고) |

| | |
|---|---|
| **Q-11** | **산학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관련, 출원 및 등록의 실적 인정 기준시점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A-11** | 사업연도 기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각 시점이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으로 산정합니다. |

| | |
|---|---|
| **Q-12** | **휴직 중인 교원 및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 창업 실적도 대학창업 실적에 포함되는지?** |
| **A-12** | 교원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에 창출된 창업 실적도 핵심성과지표 산정 기준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 | |
|---|---|
| **Q-13** | **산업체 재직자 교육의 경우 교육시간 기준 12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된 교육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산정되는지?** |
| **A-13** | '전임교원 참여 비율' 지표 산정 시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실적은 교육시간 기준 12시간 이상(최소인원 5명) 운영된 교육을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실적' 지표의 경우, 유료 교육과정은 총 12시간 이상(최소인원 5명)의 과정, 무료 교육과정은 총 4시간 이상의 과정(최소인원 2명)에 대하여 실적으로 산정됩니다. |

# 4 사업 수행 일반

| | |
|---|---|
| **Q-1** | **LINC 3.0 관련 교과목이란?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의 정의는?** |
| **A-1** | LINC 3.0 관련 교과목은, 대학별 LINC 3.0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산학연협력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목으로,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br>*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 산업체(기업) 등 산학연 유관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산학연 연계 활동의 결과가 창출되도록 운영되는 교육과정(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산학연 연계활동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인정 기준으로 산학연 연계 교육 협약서, 수업계획서, 산학연 연계 교육결과 보고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 **Q-2** | **교원 참여 확대를 위한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
| **A-2** | LINC 3.0 사업비 집행 내용으로 LINC 3.0 사업 관련 보직수당, LINC 3.0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원의 산업체 겸직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임교원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시행하여야 합니다. |
| **Q-3** | **기술혁신선도형이 아닌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에서도 글로벌 산학연계 교육모델이 주요 사업 프로그램으로 수행되는 것인지?** |
| **A-3**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유형별 주요 추진사항〕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유형별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원형(prototype)을 제시한 것이며, 사업유형별 목표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글로벌 산학연계 교육모델 운영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대내 · 외 환경변화 및 산업 수요에 따라 요청되는 비대면 · 글로벌 산학연계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모든 사업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 **Q-4** | **산학연협력 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의 역할, 소속, 지위는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
| **A-4** |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대학에 산재된 다양한 산학협력 관련 인적 · 물적 자원 및 생산물 등 정보의 관리 ·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조직 및 위상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

| | |
|---|---|
| **Q-5** | **기업과의 쌍방향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
| **A-5** |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세부 시행계획」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현장실습, 산학공동 기술개발·연구개발, 기술이전, 공용장비 운영 등 대학 산학협력 활동 확대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활용 ■산학협력 마일리지 거래 등 기업과의 연계체계 고도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 **Q-6** | **3S 지수 관련, 진정성지수에서 전임교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유·협업지수는 대학내 협업 또는 대학간 협업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
| **A-6** | ▪ 3S 지수는 '산학연협력 활동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대학별 산학연협력 진정성, 공유·협업 수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3S 지수'를 자율성과지표로 개발하여 운영합니다.<br>▪ 진정성지수에서 전임교원의 실질적 참여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주체가 되고, 학과(부, 전공) 및 정규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며, 이를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br>▪ 공유·협업지수는 "대학의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학협력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학협력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권역, 국가의 공간적 장벽을 넘어 상호 공유·협업 활동과 확산을 통해 산학연협력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유·협업 활동 및 지수는 대학 내, 대학 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모두 포괄합니다. |
| **Q-7** | **ICC 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ICC 수를 정하고 있는데(기술혁신선도형 5개 내외, 수요맞춤성장형 및 협력기반구축형 3개 내외), 해당 수를 초과하는 ICC에 대해서는 운영 및 활동비 등 관련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
| **A-7** | ICC는 대학의 특화분야(역량 분야, 신산업 혁신분야 등)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혁신하는 거점 센터입니다. ICC는 특화분야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하여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 인프라, 공유·협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산학협력 주체(산업체, 연구소 등)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타 지역 또는 ICC와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형태로 운영됩니다. ICC의 특성 및 운영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유형별 ICC의 적정 운영 수는 기술혁신선도형 5개 내외, 수요맞춤성장형 및 협력기반구축형 3개 내외로 하여 각 ICC가 해당 특화분야의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정 ICC 수를 초과한 신규/예비 ICC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 활동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 Q-8 | **산학 연계 현장실습지원협의회(KACE), 산업교육센터와 LINC 3.0 사업 수행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하면 되는지?** |
|---|---|
| A-8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에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학연 플랫폼의 구축 및 통합적 운영체제와 효율적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LINC 3.0 사업은 산학연협력 자원을 공유·활용하여 개별 대학 간, 대학-산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한국 산학 연계 현장실습지원협의회(KACE)*, 산업교육센터**(한국연구재단) 등 산학연 플랫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됩니다.<br>* 한국 산학 연계 현장실습지원협의회(Korea Association for Co-operative & Work-Integrated Education, KACE) :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산학 연계 교육으로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안착과 질적 내실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서 설립된 대학 자율적 협의체. 산·학·관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전문가 토론회(포럼),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의 과정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22~) ('한국 산학 연계 현장실습협의회(KACE) 설립·운영(안)', 2021.4., 교육부)<br>** 산업교육센터 : 산업교육 활성화 및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연구 수행, 정책기획·조정 지원, 관련 통계분석·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문지원 기관 |

# 5 사업비 집행

| | |
|---|---|
| Q-1 | **LINC 3.0 산학연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에 대한 성과급을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 A-1 | ▪ LINC 3.0 사업비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에 따라, 인건비(총 국고지원 사업비의 25% 이내) 항목의 집행내용으로, LINC 3.0 사업 관련 보직수당, LINC 3.0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성과급 및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직수당, 성과급, 인센티브는 합산하여 국고지원금 총액의 5% 범위 내, 1인당 연간 500만원(합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br>▪ 다만, 대학본부 소속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며, 교원의 정규 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합니다. |
| Q-2 | **인문사회분야 산학연협력, 지역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활동은 LINC 3.0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
| A-2 | 산학연협력은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사업 추진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수행되어야 하며, 산학연 플랫폼 등 연계 체계는 산학연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기여하므로, 미래산업 대응 융합 인재양성, 지역기업 혁신, 공유·협업 등 LINC 3.0의 주요 추진 전략 및 대학 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Q-3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지급 기준은?** |
| A-3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인건비의 50% 이내라 하더라도 1인당 최대 4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급여)의 50% 이상은 대학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Q-4 | **대학 본부 소속 직원이 LINC 3.0 사업단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LINC 3.0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 A-4 | 대학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국고지원금(사업비)으로 인건비 지급 불가합니다. 단,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이 LINC 3.0 사업단으로 파견되어 LINC 3.0 사업 담당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